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1.13.~11.17.)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정114공인중개사와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준상)가 지난 8일 보정114공인중개사(대표 강운경)와 지역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힘
 - 보정114공인중개사는 협약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전월세 임차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이웃을 발견하면 등에 알릴 예정
 - 협의체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가장의 마음인 사랑으로 품는다는 의미의 '행복나눔 보정 愛(애) 가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 보정114공인중개사는 보정 愛(애) 가장 3호점으로 지정
 - 강운경 보정114공인중개사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드릴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관네트워크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보정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지역 곳곳서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 등 전달

- * 용인특례시 각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전달이 이어짐
 - 수지구에는 지난 10일 민간봉사단체인 상상마을봉사단(단장 조순구)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김장김치 10kg 120상자를 기탁
 - 기흥구는 지난 9일 기흥구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00지구 용인 2지역 합동 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만든 김장 김치 총 400박스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용인2지역 소속클럽 신갈RC(회장 석재 이동채)에서 주최하고, 수지RC, 기흥RC 구성레몬RC 클럽이 주관
 - 이날 행사에는 클럽 회원 등 봉사자 80여 명이 참가함, 담근 김장김치 10kg 총 400박스는 기흥구 내 저소득 가정,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등에 전달
 - 수지구 동천동은 지난 9일과 10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음, 행사에는 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청소년지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석
 -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가꾼 배추, 갓, 무 등을 수확해 김장재료로 사용, 1440kg의 김장 김치는 12L 김치통 120통에 나눠 담아 지역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120명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살핌
 - 풍덕천2동은 지난 9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
 - 이번 행사에는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단체 회원들 70명이 참여해 1200kg의 배추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21개 경로당 등 120곳에 전달
 - 지난 8~9일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오현숙)는 ‘겨울든든 나눔김장 만들기’ 행사를 진행, 행사에는 통장협의회, 부녀회, 체육회 등 40여 명이 참가해 국내산 재료로 김치를 담갔다. 이날 만든 김치는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가구와 경로당 9곳에 10kg씩 전달
 - 처인구 모현읍에는 지난 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모현읍회(회장 심응화)가 백미 10kg 50포를 기탁
 - 같은 날 기흥구 영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단원 등 40여 명이 참여
 - 참가자들은 김치 1000kg을 버무려 10kg짜리 100박스에 나눠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핌

- 서농동은 같은 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사농원에서 '서농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김치(10kg) 50박스를 만들어 관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계층 50가구에 직접 전달
 - 신봉동에는 수지신협(이사장 이기찬)이 지난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과 생필품 27상자를 기탁
 - 지난 6일에는 서농동 체육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해 달라며 5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동에 기탁
 - 성금은 지난달 21일 동 주민화합의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분식을 판매해 마련함
 - 구갈동에는 지난 7일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GC녹십자 행복기금 약 500만원을 지원
 - GC녹십자 행복기금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민관협력 사례관리 프로젝트인 '위기가구솔루션지원단'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함, 동은 지난달 위기가구 2가구를 선정해 기금을 지원
 - 같은 날 이상호 비전컴퍼니(휘트니스) 대표는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행복상자 20개를 구갈동에 기탁, 동은 기탁받은 물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전달할 예정
 -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류상택)는 지난 6일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역 저소득가구 80세대에 전기매트, 이불 등 겨울용품 지원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기흥구/수지구 사회복지과, 모현읍,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서농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중앙동·삼가동·기흥동·동백2동·신봉동·죽전1동 주민 행사 개최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과 삼가동, 기흥구 기흥동, 동백2동, 수지구 죽전1동, 신봉동에서 주민 행사가 열림
 -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는 지난 10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돗자리 마켓 행사를 열음, 행사에서는 중고물품 나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체험부스(가훈 써주기, 신발 던지기), 재활용 수거(우유팩, 폐건전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중앙동은 지난 9일 동 체육회(회장 김형열)가 주최한 '2023 중앙동민의 날, 건강 걷기대회'를 열음
 - 이날 대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요인사,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
 -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금학천을 거쳐 현대아파트, 용인중학교까지 3.5km의 코스를 함께 걸음
 - 죽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재만)는 같은 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팀의 작품 전시회와 발표회를 열음

- 식전 행사로 색소폰 연주, 민요타령을 선보이고 본행사에서는 동 전속밴드인 제이제이원밴드 힐링콘서트와 수강생 작품발표회가 진행, 발표회에는 우리춤체조, 통기타, 포크댄스, 민요 4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익힌 기량을 발휘함
- 작품전시회에는 수채화, 민화, 서양화, 서예, 캘리그래피, 문인화, 인물화 100여 점이 출품, 전시는 24일까지 이어짐
- * 기흥동은 지난 8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를 개최
 -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6개 팀 40여 명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통기타·노래·요가·다이어트댄스·헬스·버드리장구·시니어모델워킹 등을 선보였다. 유화, 캘리그래피, 한문 서예, 보태니컬 아트 수강생들과 창의미술 수강 어린이들의 작품전시회도 열려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
 -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동백역 보담공원에서 '한밤의 가을 버스킹' 콘서트를 열었음, 3일 동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한 이 행사는 히든싱어 조성모편 준우승 수상자인 모건을 시작으로 용인시 청소년 힙합래퍼 MAM팀, 10월 14일 진행한 석성산 노래자랑 대상자, 싱어송라이터 등 다수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사함, 문화재단 버스커팀 매직유랑단의 마술공연도 선보임
 - 삼가동은 지난 4일 삼가초등학교에서 '제1회 삼가동민의 날'을 개최, 이번 동민의 날은 2021년 역삼동에서 분동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행사는 삼가동 체육회가 주최, 주관해 삼가초 후문에서 부아산 정상까지 1.8km를 왕복해 걷는 행사로 진행함, 행사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중앙동, 삼가동, 동백2동, 신봉동, 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취약계층 9만 명 학생 대상으로 월 만오천원 우유바우처 제공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취약계층 9만 명 학생 대상으로
월 15,000원 우유바우처 제공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됨
 -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 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 있음
 -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음
 -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기준): ('10) 51.8% → ('15) 51.1% → ('22) 29.1
 -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③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
 -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

- *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정책방향 동의(94.2%), ②재신청의사(96.9%), ③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 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 농식품부는 10.24(화)부터 11.10(금)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농림축산식품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

-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11.6.~11.16. 행정예고, 12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이번이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하며,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
- [보건복지부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
-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3) 지원 내용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 없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 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 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한국 희귀질환 의약품센터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 조제	4,000 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 원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

(4) 신청 절차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요건(㉠)만 갖추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참고 |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자별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별도 통보 예정
-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붙임2>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붙임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상세)

-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 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 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 한국회귀·필수 의약품센터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 조제	4,000 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1알 1,400원 2알 1,600원 3알 이상 2,000원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8)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단, 의원급은 10%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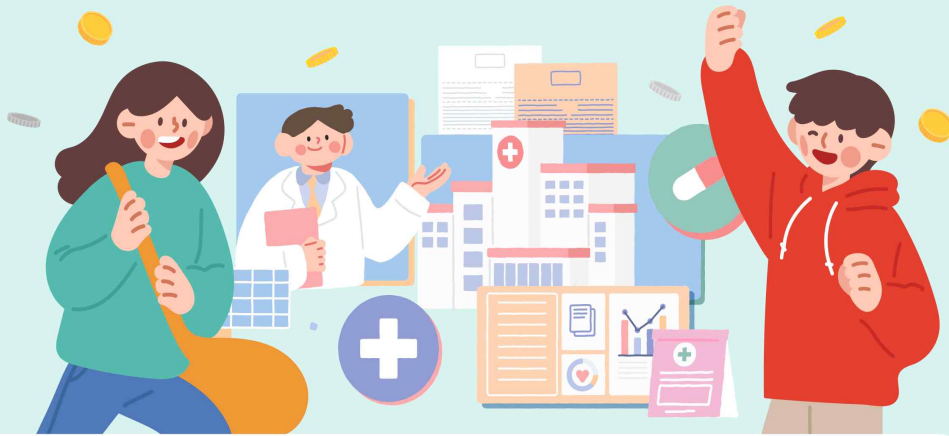
붙임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되는 자는 자립수당 신청 시 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11월 13일부터 개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 한국회귀 필수 의약품센터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이하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우수 제안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수익성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육성 본격 추진 >

< 서울 금천구·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2024년부터 사업 운영 시작 >

- *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월)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5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힘
 -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자체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를 최종 선정함,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안에 사업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
 - 이번에 선정된 진주시와 금천구는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익산시와 영암군은 식사·도시락 사업단, 송파구는 세탁 사업단을 운영하여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
 - 선정된 지자체는 본 사업을 수행할 시니어클럽(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단 공간 무상 제공,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였고, 진주시와 영암군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하여 재가노인이 식사, 세탁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보건복지부는 당초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투자를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24년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발굴,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

-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힘
 -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
 -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 ☎ 1523 : 이통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대상 자격확인 시 가입자가 생년월일 직접입력 · 상담사 연결(SKT) 또는 센터 상담사가 응대 시 생년월일 확인(KT, LGU+)

※ 유사번호를 주의하시고,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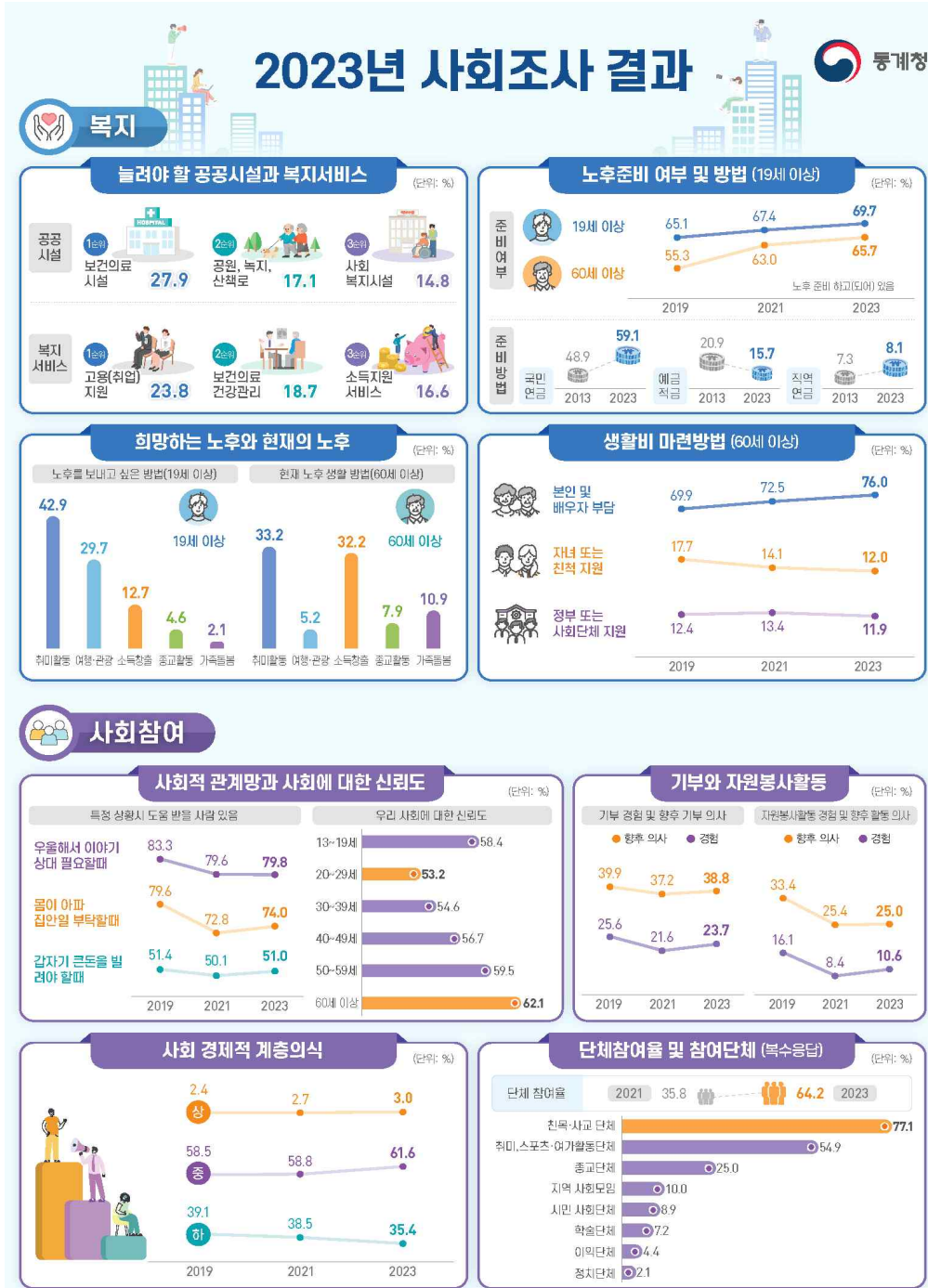
- 그 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
-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 보도자료 참조(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